

폐기물부담금제도 증빙자료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별 증빙자료

대상품목	확인 항목	증빙자료	
플라스틱 제품	순중량 신고	제품이 100%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순중량 적용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함유량 신고	제품의 일부만 플라스틱인 경우, 직접 입력한 중량으로 적용 (개당 중량을 g단위로 입력)	<제품의 재질 및 무게 증빙자료> (택 1) 1. 재질증명서(Bill of material, BOM) :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 2. 저울사진 : 직접 분해 후, 저울에 올려 찍은 사진 3. 시험성적서 :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비대상 신고	제품에 플라스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천연가죽, 목재, 금속, 섬유 등)	함유량 신고 증빙자료와 동일
살충제/유독물 용기	용기의 수량/용량 (500ml 초과/이하) 및 재질(플라스틱, 유리병, 금속캔)	Packing List, 용기 사진(용량, 재질)	
	살충제-유독물이 아닐 경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조회결과 등	
부동액	용량(리터) 및 수량	제품 사진(용량) Packing List 또는 invoice 등	
1회용 기저귀	날개 수량	제품 사진(박스, 팩), Packing List	
담배	수입수량을 1갑(20개비)으로 환산 수량	Packing List 또는 invoice 등	

폐기물부담금 비대상 증빙자료

부과면제 사유	준비하실 서류
최종제품의 원·부재료로 사용 (최종제품 제조자가 부과대상)	자사 사용 ①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 ※ 원·부재료를 수입하여 최종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임
	타사 (제조업체) 납품 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연도별) ② 대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각매 또는 거래처현황 (사업자번호 / 상호 / 업태 / 종목 / 소재지 / 연락처) ※ 공급받는자 업태: 제조업 확인 ③ 공급제품 활용 용도 설명자료
재활용의무대상(EPR) 및 환경성보장제(EcoAS) 대상품목	① 재활용의무대상(EPR) 또는 환경성보장제(EcoAS) 이행실적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사본
재질(천연가죽, 목재, 금속, 섬유 등) 비대상	제품사진, 카탈로그, 재질 확인 가능한 성분표 등
연구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정관
생분해성 수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의료기기	*환경부 고시 제2020-259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제2조 -분류번호(등급) 확인 필요(분류번호와 등급이 명시된 의료기기 수입인증서)
수출	직접 수출 ① 수출신고필증(비고란에 수입신고번호와 수출량이 기재된 건에 한함) ②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서 ③ 관세환급신청서(갑, 병지)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영세세금계산서
	간접 수출 ① 영세세 세금계산서 또는 내국 신용장 ② 관세영도관련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표준증빙자료 활용안내 및 납부방법

폐기물부담금 표준증빙자료 활용안내

[수입실적신고] 메뉴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준증빙자료(플라스틱/일반물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함유량 증빙자료 엑셀 예시

no.	모델명	플라스틱 분해 전(플라스틱+금속/유리 등 원재료) 사진	중량(g)	플라스틱 분해 후(플라스틱 만) 사진	중량(g)	동일중량 모델	비고(추가 증빙자료 파일명)	추가 첨부파일명
1	bicycle-A400		5,000		1,620	A500-2859_BK B500-2597 C500-3000		
4	baby stroller-AW3908	(제조사 공문이 있는 경우 사진 생략 가능)	16,000		5,000	baby stroller-QR3905		
5	plastic sheet	(제조사 공문이 있는 경우 사진 생략 가능)	120		120		제조사공문(BOM)	첨부파일 1번_제조사공문(BOM)
6	Router-BW93A	(제조사 공문이 있는 경우 사진 생략 가능)	3,000		3,000	Router-88935Q Router-A250		

* 엑셀파일은 여러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시트별 증빙자료 예시가 들어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유량 엑셀작성방식, 해외제조사 공문 등)

폐기물부담금 납부방법

(* 한국환경공단 계좌로 납입불가, * 가상계좌 없음)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필요)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회원으로 가입)
- 메뉴선택 : 지방세·세외수입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진행[계좌/카드 결제 선택]
- 전자납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카드 결제 : 카드수수료(납부금액의 약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외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서비스

- 인터넷뱅킹 접속
- 공과금 납부 → 국세 →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진행

폐기물부담금제도 간편안내 (수입업자용)



폐기물부담금제도 메뉴얼

* 메뉴얼은 정보자료실 탭에 있음



폐기물부담금제도 유튜브채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주 소 (07566)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연 락 처 02-3153-0540,2~5
관할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12조(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고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출고·수입실적 합산기간 : 1년 (2023. 1. 1. ~ 2023. 12. 31.)

출고·수입실적 제출기한 : 2024. 3. 31. 까지

출고·수입실적 제출방법 :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 : www.budamgum.or.kr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폐기물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

【자원재활용법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제품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은 총 7종으로 일반제품 6종 및 플라스틱 제품

일반제품



살충제 용기 (유리병,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검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부동액
(자동차, 건설, 농기계 - 선박 제외)



1회용 기저귀
(동물용 배변패드 포함,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제외)



담배
(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살충제, 유독물 용기	가. 플라스틱 용기	500ml 이하	가. 플라스틱 용기 24.9원 / 개
		500ml 초과	30.7원/개
	나. 유리병	500ml 이하	나. 유리병 56.2원 / 개
		500ml 초과	56.2원 / 개
다. 금속캔(유독물 한정)	500ml 이하	다. 금속캔 53.9원 / 개	
	500ml 초과	78.2원 / 개	
부동액	부동액(자동차, 건설, 농기계)	ℓ 당 189.8원	
검	검	판매가의 1.8%(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애견용 배변패드 포함, 의료기관 납품용 기저귀 제외)	개당 5.5원	
담배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 제외)	20개비당 24.4원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kg당 313원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인테리어 필름 등)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일반용(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 자료의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플라스틱 종류(PE, PU, PVC ...)와 상관없이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하며,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 해당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참고】

폐기물부담금 산정

플라스틱제품 외 품목

: 2023년도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 x 부과요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플라스틱 제품

: {(2023년도 출고·수입 제품의 플라스틱 투입량(kg) - (감면량(kg))} x 부과요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 산정지수

최초의 적용년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단, 증가세 방식으로 부담금 산출하는 검은 1로 적용)

※ 2023년도 부담금 산정지수 : 1.3206 / 담배의 경우 : 1.1342 / 아이스팩의 경우 : 1.0692